

지원 테크놀로지

Assistive Technology

가정 안내서



뉴욕시 교육청

특수교육 및 학생 지원부 (Division of Specialized Instruction and Student Support)

지원 테크놀로지 및 테크솔루션 센터(Center for Assistive Technology and Tech Solutions)

Corinne Rello-Anselmi, 부교육감

목차

섹션 I: 서문 – 본 안내서의 목적.....	2
섹션 II: 지원테크놀로지(Assistive Technology:AT)의 정의.....	2
섹션 III: AT 필요성 평가.....	2
어떤 AT 장비 및/또는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3
AT 평가 절차 – 평가 요청하기.....	3
AT 평가 요청 처리절차 타임라인.....	4
섹션 IV: IEP에 AT 추천을 공식 기재하는 방법.....	5
IEP 회의에서 AT 고려.....	5
IEP에 AT를 추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	5
IEP에 AT 필요성을 반영하는 방법.....	6
섹션 V: 의무적 AT 장비 및 서비스 제공.....	7
자녀를 위한 의무 AT 장비 얻는 법.....	7
AT 훈련.....	7
AT 장비 소유권한 및 활용.....	7
AT장비를 집에 가져오기.....	7
AT 장비의 관리 및 수리.....	7
섹션 VI: 접근 가능한 교재(Accessible Educational Materials :AEM).....	8
AEM의 정의.....	8
교육청을 통한 AEM.....	8
AEM 타임라인.....	8
섹션 VII: 전환 계획.....	9
섹션 VIII: 자주 묻는 질문과 답(FAQ).....	9
IEP 상의 AT와 504항의 AT 간에 차이는 무엇입니까?.....	9
지원 테크놀로지(Assistive Technology:AT) 및 학습 테크놀로지(Instructional Technology :IT)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9
섹션 IX: 교육청 연락처.....	10
섹션 X: AT관련 연방법.....	10
메모:.....	11

섹션 I: 서문 - 본 안내서의 목적

교육청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의 의미 있는 교과과정 접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귀 자녀는 교육프로그램에 지장 없이 참여하고 자신의 학업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 테크놀로지(Assistive Technology :AT) 또는 접근가능한 교재(Accessible Educational Materials:AEM)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AT과 AEM은 모두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교과과정에 의미 있게 접근하고 학업적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본 안내서의 목적은 모든 학생들의 최선의 교육적 결과를 성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AT와 AEM에 관해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섹션 II: 지원테크놀로지(ASSISTIVE TECHNOLOGY:AT)의 정의

AT란 학생들이 학습교재로부터 혜택을 받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말합니다. AT는 장애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방 특수교육법인 장애인 교육법(IDEA)에서는 AT 장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을 증가, 유지 또는 개선시키는 데 사용되는 모든 물건, 도구 또는 생산 시스템을 말한다."

AT 장비는 일반적으로 "로우-테크", "미드-테크" 또는 "하이-테크"로 분류됩니다. 각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우-테크 장비에는 경사 보드, 의사소통용 종이 보드/카드 및 글자 하이라이트 등이 포함됩니다.
- 미드-테크 장비에는 계산기, 단일 스위치 및 워드 프로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 하이-테크 장비에는 다이내믹 디스플레이 커뮤니케이션 증폭장치, 언어-문자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및 시선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IDEA에서는 무료의 적절한 공립교육(FAPE)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에게 각 학군에서 AT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팀은 학생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교과과정에 접근하는데 AT가 필요한지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AT 웹사이트](#) 또는 [장애학생을 위한 AT 참고 가이드](#)를 보십시오.



어떤 AT 장비 및/또는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귀 자녀가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자신의 교육과 의사소통 및/또는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AT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귀 자녀의 학교에서 AT 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AT 평가는 어느 때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요청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에서 귀 자녀에게 AT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에서는 평가절차를 시작하고 평가를 완료하기 위하여 동의서를 받기 위해 부모님께 연락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학교에서 귀 자녀가 AT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 평가는 무료이며, AT 추천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에는 귀 자녀의 IEP팀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귀 자녀가 AT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IEP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귀 자녀에게 IEP가 없는 경우, 귀하께서 하신 AT 평가 요청은 특수교육 또는 504 의뢰의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일 교육청에서 귀하의 평가 요청을 거절할 경우, 거절 사유가 설명된 서면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귀 자녀의 학교 역시 아무 때고 귀 자녀에게 AT가 적절한 것인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에서 귀 자녀에게 AT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학교에서 부모님께 연락하여 자녀의 평가 동의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귀 자녀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 또는 다분야 전문가 팀에 의해 평가될 것입니다. 일부의 경우, 학생의 필요사항이나 제공 가능한 전문분야에 따라 AT 평가가 학교 교직원에게 의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학교에서 중앙 교육청 직원이 평가를 완료할 것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AT 평가자는 자격을 갖춘 학급 교사, 언어교사, 언어병리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및 기타 AT 전문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자녀의 AT 평가 절차 중에, 원하신다면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의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며, 부모로서의 의견과 염려되는 점 등을 제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IEP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AT 평가 절차 - 평가 요청하기

AT 평가를 요청하시려면 다음 두 단계 절차를 밟으십시오:

1. 자필 혹은 타이프로 작성된 AT 평가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자녀의 AT 평가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기술한 편지를 작성하시되, 여기에 다음 내용을 담으십시오:

- 요청 일자
- 자녀 성명
- 자녀 생년월일
- 자녀가 학중인 학교
- 자녀의 9자리수 학생 ID (OSIS #), 있는 경우
- 귀하의 성명 및 서명
-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점, 그리고 자녀에게 AT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답하기 원하는 경우에만)

2. 이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시던가 다음 중 한 곳에 직접 전달하십시오: 학교 심리상담가 또는 자녀 학교의 학교장(1-32 학군 & 제 75 학군), 또는 귀 가정을 담당하는 CSE 대표 (차터 및 비공립 학교 학생).

이후, 귀하께는 동의요청서가 우송될 것입니다. 이것은 귀하께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공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귀 가정에서 편지를 보낸 지 15일 이내에 발송됩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편지를 보낸 지 15일 이내에 동의서 양식을 받지 못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공립학교 학생의 경우 (차터 스쿨 제외): 편지의 사본을 다시 한 번 [귀 자녀의 학교가 위치한 학군의 학군장\(Sperintendent\)](#)에게 보내시고,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 기타 모든 학생들의 경우: 편지의 사본을 다시 한 번 [귀 자녀의 학교가 위치한 학군의 CSE 의장\(Chairperson\)](#)에게 보내시고,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 또한 relatedservices@schools.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전화 311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AT 평가 요청 처리절차 타임라인

교육청에서는 가능한 빨리 학생들이 평가를 받아서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 AT 평가요청서를 제출하신 지 15일 이내에 공식 동의서 양식을 수신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부모님의 공식 동의 없이는 평가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귀 가정에서 동의서 양식을 교육청에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동의서를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귀 자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평가 절차를 지체할 경우, 이와 같은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60 역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귀 가정에는 평가 승인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이 문서는 귀 가정에서 적절한 면허를 갖춘 비교육청 (사설) 평가자를 선택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비용은 교육청

부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공립 및 사립 기관, 그리고 기타 전문기관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섹션 IV: IEP에 AT 추천을 공식 기재하는 방법

평가 절차가 완료된 이후, IEP 팀에서는 이 학생이 학습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자신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는데 AT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추천하게 됩니다. 만약 IEP 팀에서 AT 장비 및/또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IEP 팀은 반드시 이것을 IEP에 명시하여 교육청에서 이러한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공식화 해야 합니다.

IEP 회의에서 AT 고려

IEP 팀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 AT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IEP 팀은 학생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AT의 필요성을 숙고해야 합니다. AT의 고려는 귀 자녀만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근거한 것입니다. IEP 팀은 학생본인의 상태 및 완수해야 할 과제, 환경, 학생의 현재 수행레벨, 현재 조정사항/테크놀로지는 물론 학생의 강점과 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의 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AT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IEP에 AT를 추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

IEP 팀은 IEP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 중심의 AT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과제의 성공적 완수와 이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합니다. 이러한 최선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IEP 팀에서는 다음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학생, 환경, 과제 및 도구를 두루 고려하는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학생과 관련된 접근영역 및 학습 분석;
- 각각의 적절한 학습접근 영역에서의 교육적으로 연관된 과제에 관한 검토;
- 학생이 상기 언급된 관련 과제를 하도록 요구되는 각기 다른 환경에 관한 검토;
- 현재 사용 또는 실행 중인 표준 학급 도구, 편의사항, 조정 및 AT 솔루션에 관한 검토 및 이러한 전략이 학생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지에 관한 판단;
- AT 평가(평가를 실시한 경우) 검토; 및
- 가능한 해법 도출, 이 때, 학생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여겨질 때에는 AT 포함.

IEP 팀이 AT를 고려할 때에는 교육청의 AT 고려 체크리스트(AT Consideration Checklist)를 활용할 것이 권장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모든 연령대와 능력레벨의 학생들에게 적절한 AT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하며, AT 검토시 사용된 절차의 공식 문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AT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든 학습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현재 학생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학급



도구, 조정 및 편의사항 등과 더불어 AT 솔루션을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IEP팀은 또한 AT 자료 가이드(AT Resource Guide)를 참고하여 현재 AT의 조정 가능성, 편의사항, 표준 학습 도구 및 장치 시행할 AT 솔루션이나 조정, 편의사항 및 테크놀로지 솔루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AT 고려 체크리스트와 병행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tiny.cc/ATResourceGuide>.

IEP에 AT 필요성을 반영하는 방법

만약 IEP팀에서 학생에게 AT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IEP에는 추천된 AT 서비스 및/또는 장치(들)에 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IEP의 AT 박스에 체크표시를 하여 AT가 추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추천하는지 명시합니다;
- AT를 사용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 및 구체적 추천사항.

또한 AT는 다음과 같이 IEP의 다른 섹션에서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수행 레벨 (PLOP),
- 추천된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시험시 편의사항 목록, 주 및 학군 평가 참여여부;
- 측정 가능한 연례목표 및 벤치마크.

섹션 V: 의무적 AT 장비 및 서비스 제공

자녀를 위한 의무 AT 장비 얻는 법

귀 자녀에게 AT가 의무로 지정되었을 경우, 교육청에서는 귀 자녀의 IEP에 추천된 모든 장비 및/또는 서비스를 교육청 비용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AT 장비 및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귀 자녀의 학교나 CSE로 배달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가정이나 CSE에서 AT 장비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AT 훈련

교육청에서는 필요에 따라 학생, 교사, 기타 학교 행정담당자 및 가족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교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초기 훈련은 평가팀에서 제공합니다. 교직원들은 AT의 효율적인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비의 통합과 활용, 그리고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책임져야 합니다.

AT 장비 소유권한 및 활용

교육청이 제공하는 모든 AT 장비는 교육청에서 구입하고 소유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교육청 산하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나 뉴욕시 교육청 밖으로 전학 가는 학생들은 반드시 교육청에 AT를 반납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IEP에서 요구하는 AT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IEP에 명시된 경우 학생은 가정에서 교과과정에 접근하기 위하여 AT 장비를 소지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AT장비를 집에 가져오기

IEP팀은 학생이 무료의 적절한 공립 교육(FAPE)을 받기 위하여 가정에서도 AT 장비가 요구되는지 판단합니다. 이 정보는 학생의 개별교육프로그램(IEP)의 특수요인과 관련된 학생의 요구(Student Needs Relating to Special Factors)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IEP 팀에서 귀 자녀가 교과과정에 접근하기 위해 가정에서도 AT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 자녀는 제공받은 장비를 가지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AT 장비의 관리 및 수리

AT 장비를 관리하는 것은 학교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 그리고 학생의 공동 책임입니다. 귀 자녀의 학교 IEP팀은 AT 장비가 분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수리 또는 대체를 주선할 책임이 있으며, 귀 자녀가 IEP에 의거하여 효율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 프로그래밍하거나 기타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귀 자녀의 AT장비를 대체해야 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즉시 학교 IEP 팀에 연락하십시오.

섹션 VI: 접근 가능한 교재 (ACCESSIBLE EDUCATIONAL MATERIALS :AEM)

AEM의 정의

접근 가능한 교재(Accessible Educational Materials :AEM)란 표준의 인쇄된 교재를 사용할 수 없는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포맷으로 변환된 교과서 및 관련 교재를 말합니다. 이러한 포맷에는 점자, 대형활자, 오디오 및 디지털 텍스트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또한 접근 가능한 학습교재 (Accessible Instructional Materials :AIM)라고도 지칭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귀 자녀가 맹인이거나 시각장애가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일반 인쇄된 교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학교에서는 반드시 이 학생에게 AEM이 필요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만일 귀 자녀에게 AEM이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학교에서는 귀 자녀의 또래 학생들이 교과서나 워크북을 지급받는 것과 동일한 시점에 귀 자녀에게 대안의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된 교재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귀 자녀는 일반 교과과정 전반에 사용되는 학습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교재가 필요하나, 그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서 특수한 포맷이 필요한 경우 AEM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한 AEM

귀 자녀에게 AEM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학교에 연락하여 학교측에서 귀 자녀의 AEM 필요성을 판단하고 귀 자녀에게 적합한 특정 포맷 (예, 점자, 대형 활자, 오디오 및 디지털 텍스트 등)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적절할 경우, 귀 자녀의 학교에서 이 절차를 먼저 시작할 것입니다. AEM이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은 자녀의 IEP 또는 504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귀 자녀가 AEM에 접근하기 위해 AT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예를 들어 문자-언어 변환장치), 이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귀 자녀가 AEM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학교측에서 교재를 제공하며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합니다. 가정에서는 특정한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계정을 주는 Bookshare도 알아 보십시오. 귀 자녀가 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기타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Bookshare.org 을 참고하십시오.

AEM 타임라인

AEM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교재를 지급받는 것과 동일한 시점에 특수 교재를 받아야만 합니다. 학습 교재를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 자녀의 학교에서는 사전에 미리 학습지도 계획을 세워 귀 자녀가 다른 학생들과 동시에 AEM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섹션 VII: 전환 계획

만약 학생에게 AT가 필요하고 학생의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IEP에 AT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전환 계획팀과 부모님이 학생이 졸업하는 해의 이른 봄에 만나 회의를 갖고 차후 지원계획을 논의해야 합니다. 학생의 AT 필요성의 세부사항은 학생의 전환 패키지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학생의 졸업 후 이 학생을 담당하게 될 기관이나 학교에서 이 정보를 갖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케이드 웨이버를 받는 학생들은 필요한 AT를 받기 위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AT 업체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장비를 구하는 절차를 도와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AT 장비는 교육청 재산으로서, 졸업이나 다른 학군으로의 전학과 동시에 교육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섹션 VIII: 자주 묻는 질문과 답(FAQ)

IEP 상의 AT와 504항의 AT 간에 차이는 무엇입니까?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들이 IDEA 하에 IEP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생활 기능을 크게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생은 1973년 제정된 재활법 504항에 의거해 편의제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504팀은 학생의 장애와 그 심각성에 근거하여, 이 학생이 비장애 또래학생들과 동등한 선상에서 학교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편의사항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회의를 거칩니다. 학생 개인의 필요에 따라 504 조정사항에는 AT 장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504 조정사항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504 조정사항 가정 안내서를 참고하십시오: <http://tiny.cc/504FAQs>

지원 테크놀로지(ASSISTIVE TECHNOLOGY:AT) 및 학습 테크놀로지(INSTRUCTIONAL TECHNOLOGY :IT)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학습 테크놀로지” (IT)가 됩니다.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교과과정에 접근할 수 없는 장애학생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경우 “지원 테크놀로지(Assistive Technology)”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모든 AT는 학생의 IEP나 504 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IT는 기타 방식으로 교과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장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섹션 IX: 교육청 연락처

귀 가정에서는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시어 지원 테크놀로지에 관한 논의를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다음 연락처로도 문의해 보십시오:

- 공립학교 학생의 경우 (차터스쿨 제외): 귀 자녀의 학교가 위치한 학군의 학군장(Sperintendent)에 문의해 보십시오.
- 기타 모든 학생들의 경우: 귀 자녀의 학교가 위치한 학군의 CSE 의장(Chairperson)에 문의해 보십시오.

섹션 X: AT관련 연방법

장애인 교육법 (IDEA): <http://idea.ed.gov/>

장애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http://www.ada.gov/>

재활법 제 504항: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cr/504faq.html>



**Department of
Education**

Carmen Fariña, Chancellor